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56
----------	-----

제출연월일 : 2001.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시장이 업무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의료인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의 대가는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안 제2조).
- 나. 업무대행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함 (안 제3조, 제4조).
- 다. 업무대행 의료인의 손해보험가입의무를 명시함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 입법예고 : 2001. 1. 20. ~ 2001. 2. 9. (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조례 표준안 (경기도)

안산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① 시장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의료인과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업무대행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장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보 건 소
입 안 자	실·국장 직위·성명	보건소장 김 태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건행정담당 한 재 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 춘 근 (행정 2551)

안산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56
------------	-----

제안년월일 : 2001. 4. 14.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그 해지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실한 계약이행과 업무대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2항 중 “개인적인”을 “부득이한”으로 “계약해지일”을 “계약해지 희망일”로 수정함.

안산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개인적인”을 “부득이한”으로 하고, “계약해지일”을 “계약
해지 희망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계약의 해지)</p> <p>①(생략) 1.~5.(생략)</p> <p>②업무대행자가 <u>개인적인</u>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계약</u> <u>해지일</u> 2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계약의 해지)</p> <p>①(원안과 같음) 1.~5.(원안과 같음)</p> <p>②.....<u>부득이한</u>.....<u>계약</u> <u>해지 회망일</u>.....</p>